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5.6.1.>

직각좌표의 기준(제7조제3항 관련)

1. 직각좌표계 원점

명칭	원점의 경위도	투영원점의 가산(加算)수치	원점축척계수	적용 구역
서부좌 표계	경도: 동경 125° 00 위도: 북위 38° 00′	X(N) 600,000m Y(E) 200,000m	1.0000	동경 124°~126°
중부좌 표계	경도: 동경 127° 00 위도: 북위 38° 00′	X(N) 600,000m Y(E) 200,000m	1.0000	동경 126°~128°
동부좌 표계	경도: 동경 129° 00 위도: 북위 38° 00′	X(N) 600,000m Y(E) 200,000m	1.0000	동경 128°~130°
동해좌 표계	경도: 동경 131° 00 위도: 북위 38° 00′	X(N) 600,000m Y(E) 200,000m	1.0000	동경 130°~132°

비고

- 가. 각 좌표계에서의 직각좌표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$T \cdot M(Transverse Mercator, 횡단 머케이터) 방법으로 표시하고, 원점의 좌표는 <math>(X=0, Y=0)$ 으로 하다.
 - 1) X축은 좌표계 원점의 자오선에 일치하여야 하고, 진북방향을 정(+)으로 표시하며, Y축은 X축에 직교하는 축으로서 진동방향을 정(+)으로 한다.
 - 2) 세계측지계에 따르지 아니하는 지적측량의 경우에는 가우스상사이중투 영법으로 표시하되, 직각좌표계 투영원점의 가산(加算)수치를 각각 X(N) 500,000미터(제주도지역 550,000미터), Y(E) 200,000m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나.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리정보의 위치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직각좌표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2.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구소삼각지역의 직각좌표계 원점

명칭	원점의 경위도	
피노지 이 과	경도: 동경 126°22′24″. 596	
망산원점	위도: 북위 37°43′07″. 060	
계양원점	경도: 동경 126°42 ′ 49″. 685	
/11 O C D	위도: 북위 37°33′01″. 124	
조본원점	경도: 동경 127°14′07″. 397	
	위도: 북위 37°26′35″. 262	
가리원점	경도: 동경 126°51 ′ 59″. 430	
719121	위도: 북위 37°25′30″. 532	
등경원점	경도: 동경 126°51 ′ 32″. 845	
ООСИ	위도: 북위 37°11′52″. 885	
고초원점	경도: 동경 127°14′41″. 585	
— 3. С. р	위도: 북위 37°09′03″. 530	
율곡원점	경도: 동경 128°57 ′ 30″. 916	
	위도: 북위 35°57 ' 21". 322	
현창원점	경도: 동경 128°46 ′ 03″. 947	
	위도: 북위 35°51 ′ 46″. 967	
구암원점	경도: 동경 128°35 ′ 46″. 186	
, , , ,	위도: 북위 35°51 ′ 30″. 878	
금산원점	경도: 동경 128°17 ′ 26″. 070	
P C C P	위도: 북위 35°43 ′ 46″. 532	
소라원점	경도: 동경 128°43′36″. 841	
<u> </u>	위도: 북위 35°39′58″. 199	

비고

- 가. 조본원점·고초원점·율곡원점·현창원점 및 소라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, 망산원점·계양원점·가리원점·등경원점·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간(間)으로 한다. 이 경우 각각의 원점에 대한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 한다.
- 나. 특별소삼각측량지역[전주, 강경, 마산, 진주, 광주(光州), 나주(羅州), 목포, 군 산, 울릉도 등]에 분포된 소삼각측량지역은 별도의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.